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9-636
----------	-------

제출년월일 : 2024. 11.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2024. 11. 2.(토)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개통 이후 신안산선 미연결구간(송산~원시) 전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협약을 통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함.
- 위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관련근거 : 【붙임 1】

- 「도시철도법」 제25조
-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 국가철도공단 서해선사업단-16410호(2024.10.22.)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미연결구간 셔틀버스 운행 관련 협약 체결 요청”
- 국가철도공단 서해선사업단-16963호(2024.10.29.)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미연결구간 셔틀버스 운행 협약 체결 알림”

주요내용

- 임시 연계교통방안(셔틀버스) 운영 및 재원 분담 관련 협약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미연결구간(송산~원시) 연계교통방안 마련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협약서 : 【붙임 2】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3】

방침결정문 : 【붙임 4】

[붙임 2]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미연결구간(송산~원시)
연계교통방안 마련을 위한 -

셔틀버스 운행 협약서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이하“공단”이라 한다)와 경기도 안산시(이하 “안산시”이라 한다.), 경기도 평택시(이하“평택시”이라 한다.), 경기도 화성시(이하“화성시”이라 한다.), 충청남도 당진시(이하“당진시”이라 한다.), 충청남도 아산시(이하“아산시”이라 한다.), 충청남도 홍성군(이하“홍성군”이라 한다.)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미연결구간(송산~원시) 임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추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개통 이후 신안산선 미연결구간(송산~원시, 이하 “신안산선”이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철도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연계교통방안”에 대해 “공단”,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당진시”, “아산시”, “홍성군”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준칙) 본 협약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3879호(2024.10. 4.)」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고 세부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정의) 이 협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시 연계교통방안”라 함은 신안산선이 개통되어 서해선과 연결되는 기간 동안 서화성역~초지역 구간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2. “운행비용”이라 함은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버스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협약에 참여하는 공단,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당진시, 아산시, 홍성군을 말한다.

제4조(운행기간) 셔틀버스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2024년 11월 2일부터 운행하고, 신안산선의 개통예정일인 2026년 3월 31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건설사업의 경과 따라 운행기간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운행방법) ① 임시 셔틀버스 운행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노선 : 서해선 서화성역 ~ 서해선 초지역(4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
2. 운행대수 : 2대/일 (마을버스-25인승 카운티급 2대, 본편성 1대, 예비 1대)
3. 운행횟수 : 8회/일 (상행 4회, 하행 4회)
4. 운행시간 : (초지역) 첫차 07시 20분, 막차 18시 40분
(서화성역) 첫차 08시 20분, 막차 19시 10분

② 운행방법과 관련한 기타 협약사항

1. 상기 셔틀버스의 운행방법은 서해선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운행 시간표를 결정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 버스의 고장 및 이용고객 수요 초과를 대비하여 “화성시”는 예비차량을 상시 확보하되, 예비차량은 1대로 한다.
3. 셔틀버스 노선 경유 등 운행노선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운행노선 관련 교통시설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관계기관은 상호 협의 하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제6조(기관별 역할) 본 협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관별 역할을 정한다.

1. 국가철도공단

- 가. 셔틀버스 운행비용 50% 부담
- 나.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안내사인물 등 설치
- 다. 셔틀버스 운영 관련 역·열차 내, 스마트폰 앱(코레일톡), 홈페이지 등 홍보(한국철도공사 협조 요청)

2. 화성시

- 가. 운행비용 8.33% 부담 (지자체 부담분 50%의 1/6 수준)
- 나. 셔틀버스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다. 서화성역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 회차 대기구역 확보 및 협조
- 라. 서화성역 셔틀버스 유지 및 정비를 위한 제반업무 등

3. 안산시

- 가. 운행비용 8.33% 부담 (지자체 부담분 50%의 1/6 수준)
- 나. 초지역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 회차 대기구역 확보 및 협조
- 다. 초지역 셔틀버스 유지 및 정비를 위한 제반업무 등

4. 평택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 가. 운행비용 8.33% 각각 부담 (지자체 부담분 50%의 1/6 수준)
- 나. 셔틀버스 운영 및 관리 협조 등

5. 공통 :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민원처리 상호 협조

제7조(셔틀버스 운행비용 지급 및 정산)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운행비용 지급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셔틀버스 운행비용은 1일 1대당 일금칠십만원(7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 2. 셔틀버스 운영비용 정산은 투입일수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방법 및 정산서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정한다.

3. 화성시는 셔틀버스 운행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운행비용을 청구하고, 관계기관은 청구받은 내용에 따라 화성시에서 요청한 날까지 운행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8조(셔틀버스 운행비용 선투입) 공단은 셔틀버스 운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 분담분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며,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당진시, 아산시, 홍성군은 셔틀버스 운행비용 확보 후 적기에 지급 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기타 협의사항) 본 협약 이외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라 한다.)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협약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2. 국가정책 등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3.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이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을 때

제11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지자체 조례 및 사회통념상의 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협약서 이의)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하며, 조정이 불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3조(협약 효력발생 등) ①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7부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이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본 협약의 효력은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본 협약 체결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할 경우 그날부터 효력이 중지된다. 다만 본 협약의 효력이 중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그때까지 투입한 비용을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즉시 공단에 지급한다.

2024. 10.

국가철도공단 총청본부장 (인)	안산시장 (인)
평택시장 (인)	화성시장 (인)
아산시장 (인)	당진시장 (인)
홍성군수 (인)	